

거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6~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	2006. 8. .
제 출 자	거 창 군 수

1. 개정이유

- 「거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」 운영에 있어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심사 방법을 타 시·군과 통일성을 기하고,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도모하여 세입증대 및 세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 중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확대함(안 제2조).
 - 별정직, 기능직, 임시직, 계약직을 포함
- 나.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세분화 및 명확히 함(안 제3조).
 - 현행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,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던 것을 경과 기간에 따라 세분화 하여 차등지급하도록 하였음(1년경과 100분의 1, 2년경과 100분의 3, 3년이상 경과 100분의 5)
- 다. 계약직공무원(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) 개인별 월 지급한도액 신설함 (안 제4조).
- 라. 징수포상금지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거창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신설함(안 제5조).
- 마.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신설에 따른 징수포상금지급신청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(안 제7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조세범처벌법」, 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
 - ▶ 도 세정과-3473 【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개선방안 통보(2006. 4. 4)】 호
- 나. 예산조치 : 없음
- 다. 기타
 - (1)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 - (2)입법예고(2006. 6. 23~ 7. 18)결과 : 의견제출 없음

거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(이하 “포상금”이라 한다)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급대상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(별정직, 기능직, 임시직,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)
2.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
3.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

②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.

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“특별공적”이라 함은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, 관허사업제한, 「조세범처벌법」에 의한 고발,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,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. 다만, 거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.

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

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조(지급기준)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.

1.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
2.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
3.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
4.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("미등기 재산의 취득"이라 함은 "을"이 "갑"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"병"에게 매도하여 "갑"에서 "병"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"을"의 취득을 말한다)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
5. 납세의무 발생일(등기일 포함)로부터 1년이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
6.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. 다만,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. 단,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

제4조(지급한도액)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

1.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.(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)
2.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. 단,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(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)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.

제5조(거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)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

적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거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, 종합민원실장, 재무과장, 경제과장으로 한다.

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
2.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
3.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

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.

제6조(대장비치)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·정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급신청) ①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읍·면 공무원의 포상금 신청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붙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.

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신청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급) ①군수는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,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.

제9조(환수) ①군수는 허위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.

<별지 제1호서식 >

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

[단위 : 원]

징수 월일	징수자		징수내역					체납자		담당 주사 확인	특별징 수공적 사유	포상 금	지급 일
	직급	성명	구 분	년도 납기	고지서 번호	세목	징수 액	주소	성명				

※ “구분”란에는 과년도 체납세 경과연수(1년경과,2년경과,3년이상)를 표시

<별지 제2호서식>

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

[단위 : 전/원]

납기	부과자(제보자)			세목	구분	발 굴 세 원	납세의무자		징수 일자	담당 주사 확인	포상 금	지급 일
	직급	직위 (주소)	성명 (주민번호)				주소	성명				

※ “구분”란에는 미등기, 탈루·은익세원, 무단점용, 세입증대 등을 표시

<별지 제3호서식>

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

수신 : 거창군수

발신 :

○○읍·면장

참조 : 재무과장

[단위 : 원]

구 분		건 수	금 액			포 상 금
			합 계	본 세	가 산 금	
합 계						
과년도 채납액 징 수	소 계					
	1년경과					
	2년경과					
	3년경과					
숨은세원 발 굴	소 계					
	미등기					
	탈루·은익 세원발굴					
	무단점용					
결손처분된 채납액 징수	소 계					
	1년미만					
	1년이상 3년미만					
	3년이상					